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150
----------	-------

발의연월일 : 2025. 11. 12.

발 의 자 : 임종득 · 서천호 · 김성원
성일종 · 김예지 · 강명구
윤상현 · 김석기 · 김기현
최은석 · 서지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무원의 정년을 60세로 하고,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설, 정비, 통신 등 높은 숙련도가 필요한 기술업무는 전투력 유지의 주요 핵심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군무원의 정년이 일률적으로 60세로 규정되어 있어 기술업무 분야 인력운용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전문 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군무원의 정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기제일반군무원 임용 시 전문 지식·기술 업무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퇴직 군무원 등을 우선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군의 숙련기술 인력을 장기간 활용함으로써,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항

및 제45조제1항 후단 신설).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 정비, 통신 등 전문 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군무원의 정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4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업무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을 종사한 경력이 있는 퇴직한 군무원을 우선하여 임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1조(정년) (생략)	제31조(정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 정비, 통신 등 전문 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군무원의 정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제45조(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일반군무원 등) ① 임용권자는 전문 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 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일반군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군무원(이하 “임기제 일반군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45조(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일반군무원 등) ① ----- ----- ----- ----- ----- ----- ----- ----- ----- . 이 경우 임용예정 업무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을 종사한 경력이 있는 퇴직한 군무원을 우선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	----------------